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성낙훈

대한민국 06131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3, 2층 (역삼동, 노바빌딩)

발송일 (일/월/년) 2019년 08월 22일 (22.08.2019)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PCT2019-007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9/004499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9년 04월 15일 (15.04.2019)

우선일 (일/월/년)
2018년 11월 30일 (30.11.2018)

국제특허분류(IPC)
A61K 8/92(2006.01)i, A61K 8/36(2006.01)i, A61Q 7/00(2006.01)i, C12P 7/64(2006.01)i

출원인
주식회사 벤스랩 등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9년 08월 22일 (22.08.2019)

심사관
이기철
전화번호 +82-42-481-3353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9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4,5	있음
	청구항	1-3,6-9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9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WO 2015-111902 A1 (주식회사 벤스랩) 2015.07.30

D2: ZANZOTTERA, F. 등, Journal of Cosmetology & Trichology, 2017, 제3권, 제2호, 페이지 1-7

D3: KR 10-2016-0008774 A (주식회사 바이오랜드) 2016.01.25

D4: JP 2002-363085 A (MARUZEN PHARMACEUT CO., LTD.) 2002.12.18

D5: US 2006-0110475 A1 (SCHWALLER, M.) 2006.05.25

D6: US 8778916 B2 (DUDLEY, R. E. 등) 2014.07.15

1.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3조(2) 및 PCT 제33조(3))

1. 청구항 1-4

1.1. 청구항 1

청구항 1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문헌으로 여겨지는 인용문헌 D1에는 보라지 오일을 리파아제 효소로 처리하고, 효소 처리를 통해 유리 필수불포화지방산인 감마-리놀렌산의 함량이 높아지는 특징을 갖는 화장료 조성물이 개시 (요약, 단락 [30], [72]; 청구항 1, 13 참조)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1은 화장료 조성물이 탈모개선 효과를 갖는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차이는 인용문헌 D2에 감마 리놀렌산이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는 보라지 오일이 개시되고, 상기 보라지 오일이 탈모에 효과가 있는 점이 개시 (초록; 페이지 6, 왼쪽 칼럼 참조)되어 있어, 효소로 처리된 보라지 오일을 인용문헌 D2의 탈모에 적용해 보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따라서 청구항 1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1.2. 청구항 2-4

청구항 2의 추가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인용문헌 D1에 보라지 오일의 효소처리에 사용되는 리파아제 효소가 리조푸스속 미생물 유래인 점 (청구항 1 참조)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3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 및 D2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리파아제 효소를 수지에 고정시킨 고정화 효소는 통상의 기술자가 최적의 효과를 위해 적절히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는 구성으로서, 이로 인해 예상되는 것 이상의 특별히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2 및 3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1.3. 청구항 4

청구항 4의 추가적인 특징은 1,3-부틸렌글리콜과 혼합하여 용해시킨후, 지방산을 포함하는 분층으로 회수되는 점에서 인용문헌 D1-D6에 기재된 발명과 차이가 있으며, 상기 차이는 상기 인용문헌 D1-D6를 고려하여 보아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4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

2. 청구항 5

청구항 5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문헌으로 여겨지는 인용문헌 D1에는 10 내지 40 °C의 범위 이내의 온도로 예열된 식물성 오일 10 내지 80 중량%에 잔량으로서 리조푸스속 미생물의 배양농축물을 첨가하는 혼합단계; 및 1 내지 10 °C에서 800 내지 1200 rpm으로 원심분리시켜 수득된 상등액을 염색시켜 수득하여 얻어지는 발효 식물성 오일 제조방법 (청구항 8, 9 참조)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5는 효소 처리물을 1,3-부틸렌 글리콜과 혼합한 후, 용해시켜 지방산을 포함하는 분층으로 회수하는 분획단계에서 인용문헌 D1-D6에 기재된 발명과 차이가 있으며, 상기 차이는 상기 인용문헌 D1-D6를 고려하여 보아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따라서 청구항 5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

3. 청구항 6-9

3.1. 청구항 6, 8

청구항 6 및 8은 청구항 1의 보라지 오일을 포함하는 피부 외용제에 관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항 1의 보라지 오일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인용문헌 D1 또는 D2에 외용제 중 보라지 오일의 함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라지 오일의 함량을 조절하는 정도는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특별히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6 및 8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3.2. 청구항 7, 9

청구항 7 및 9의 추가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인용문헌 D1에 피부 외용연고, 크림, 로션, 에멀전, 화장수, 에센스, 미스트, 젤팩, 오일, 색조화장품, 비누, 바디워시, 샴푸, 린스, 입욕제, 스크럽제 등의 다양한 제형으로 제조되는 점 (단락 [81] 참조)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7 및 9는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II. 산업상 이용가능성(PCT 제33조(4))

청구항 1-9에 기재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합니다.